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안설명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의안을 제출하거나 배부할 시 종래의 “인쇄문서”와 병행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배부토록 하였으며,
- 본회의 안건심의 자료도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서도 제공하도록 하고,
- 발언허가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전자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종래의 기립표결 방식을 전자표결 방식으로 변경하되, 기기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회의록 기재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 의회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며, 이를 금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안의 제출이나 의원님들에게 의안을 배부할 시에도 “초안”에서는 전자의회 구현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해서만 인쇄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제도의 적용에 시간이 걸리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와 인쇄문서를 같이 병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상정일 5일전까지 소속의원님들에게 배부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5일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배부하기에는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기간이 너무 짧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3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안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회기시작 10일전까지로 되어 있는 금번 개정안과는 달리 회기개시 15일전으로 5일을 늘려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검토결과 급변하는 사회 여건상 조속히 입법화해야 될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사안들은 사유발생시 신속히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민권의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아울러, 타시도의 경우도 10일이 넘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안대로 10일전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이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다수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몇 차례의 유관기관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의 오류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기기 조작의 미숙 등 실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운영방식과 병행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금번 우리 시의회 본 회의장에 구축될 「전자회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회의진행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정활동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